

정리 : 편집부

[사육 가이드]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

친환경 축산을 위해 오리를 사육할 경우 시·군·구에 가축사육업등록을 하여야 하며,

- 사육시설 면적 50㎡을 초과하는 농가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
- 등록의무 면적 이하 사육농가도 희망할 경우 등록 가능

지나친 밀집 사육은 피해야 합니다.

- 축산업 등록농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“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(농림수산식품부 고시)”를 준수해야 함

◎수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

구분	수량면적	비고
산란용 오리	0.333㎡/수	다만, 무창 또는 고상식 시설은 0.15㎡/수 적용
육용 오리	0.246㎡/수	

◎수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산정방법

- ① 육성오리와 새끼오리는 성오리로 환산하여 계산함(성오리 1수 = 육성오리 2수 = 새끼오리 4수)
- ②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

구분	새끼오리	육성오리	성오리
산란용 오리	3주령 미만	3주령 이상 ~ 18주령 미만	18주령 이상
육용 오리	3주령 미만	3주령 이상 ~ 6주령 미만	6주령 이상